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8.

발 의 자 : 서삼석 · 朴芝源 · 조인철
송옥주 · 김성범 · 이개호
박용갑 · 문금주 · 이재관
권칠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자영업민 등에 대한 어업권 등 취득세 감면, 어업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을 위한 부동산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·판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등 수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이러한 규정들은 어촌지역의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법인 설립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,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회원조합 교육·지원사업 확대 및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·적정 가격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함.

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자영업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(안 제9조).

나. 어업법인이 영어·유통·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(안 제12조).

다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·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(안 제14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② · ③ (생략)

제12조(어업법인에 대한 감면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어업법인”이라 한다)이 영어·유통·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,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제14조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
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(제3호만 해당한다)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(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어업법인에 대한 감면) ①

-----2029년 12월 31일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
① -----

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(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)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(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)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(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)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

--2029년 12월 31일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제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